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 - 219호

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에 의거 흑석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07호(2008.09.11.)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2009.03.04.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된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제1항 및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13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공공재개발
-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- 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서울주택도시공사(SH)
- 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
- 마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99-3번지 일대
- 바. 정비구역의 면적 : 45,229㎡
- 사.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: 2021.09. (사업시행자 지정일)
- 아. 정비사업의 준공예정일 : 2028.09.

◆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 - 220호

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에 의거 흑석2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07호(2008.09.11.)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, 2009.03.04.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된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하고, 같은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9월 13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■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

나.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일 : 2021.09.13.

다.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 : 2021.09.14.